

서울특별시강남구고시 제2014-호

2015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결정·고시

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건물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4. 12. 31.

강 남 구 청 장

1. 건 명 : 2015년도 건물시가표준액 결정

2. 결정항목

가.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: 「소득세법」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·고시하는 가액

나. 건물별 시가표준액 - ①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
② 적용지수(구조지수, 용도지수, 위치지수)
③ 경과년수별 잔가율
④ 가·감산특례
⑤ 증·개축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
⑥ 건물시가표준액 일람표

3. 세부결정사항

강남구 세무관리과, 세무1과, 세무2과 및 각 주민자치센터에 비치하고 있는 2015년도 부동산 시가표준액표와 같음.

4. 시행일

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